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50호
2018. 3. 12

정책동향

- ▮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현황과 시사점
- ▮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시장동향

- ▮ 2월 CBSI, 전월 대비 0.8p 하락한 81.5 기록

산업정보

- ▮ 싱가포르의 건설 생산성 향상 로드맵
- ▮ 미국 PE 계속 교육 현황과 정책 시사점

건설논단

- ▮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주거복지정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현황과 시사점

- 지자체별 조례 재정비 및 이행 체계 구축을 통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해야 -

■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인 지역 건설산업

-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약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193만 여명이 근로자가 종사하는 지역경제 중추 산업임.
 - 2016년 기준 17개 광역 시·도별 건설 투자가 지역 내 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16.1%에 달하며, 일부 시도의 경우 20%를 웃도는 지역 핵심 산업임¹⁾.
- 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건설 수주는 2018년 하반기 이후 더욱 부진할 것으로 전망²⁾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지자체 차원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제정·운영 현황

-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일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포함)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앞 다투어 제정·운영 중임.
 - 지자체별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자체장과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건설산업 보호제도의 열거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중 지역 건설산업 보호 제도는 대부분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에서 지역 건설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도입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분할발주 확대 적용을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물량 제공 등이 공통된 규정임.
- 지자체 차원의 지역 건설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이러한 조례 제정은 역내공사 수주 비중이 낮은 지역 건설산업의 현실을 고려 할 때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지역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³⁾.

1) 제주 33.1%, 강원 26.7%. 충남 19.8%, 경기 19.2%, 대구 18.1%, 경북 17.9%, 전남 17.3% 순.

2) 이홍일·박철한, 2018년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부동산 경기전망세미나.

3) 2016년 수주액을 기준으로 역내업체의 총수주금액 중 역내공사 수주금액 비율은 전국 평균 51% 수준이며, 서울(19%), 광주(27%), 대전(29%), 전남(30%), 인천(31%)의 경우 여전히 50%를 하회하고 있는 실정임.

■ 지자체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문제점과 시사점

- 하지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내용 및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한 적극적 이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자체별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첫째, 경기도 등 일부 광역 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정기적(매년 또는 2년 단위)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정(또는 시정)에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시·도의 경우 조례 내 해당 내용이 부재하여 정기적 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 구축이 미흡함.
 - 또한 조례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도 서울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동적·형식적 계획 수립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⁴⁾.
 - 둘째,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의 경우 상위법령⁵⁾을 통해 최대 49%로 규정되어 있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그러나 지역업체 의무하도급 비율의 경우 지역별 50~70%까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함(서울의 경우 관련 규정 부재).
 - 셋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17개 광역 시·도 모두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지원조직도 일부 시·도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넷째, 실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육성·보호해야 할 지역 건설업체는 대부분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여야 하나, 서울 및 경기, 전북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 조례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지역 건설산업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 다섯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와 같이 모든 광역 시·도에서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방지와 관련된 내용(하도급대금 직불제 등)을 양 조례에서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어 중복 조례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재정비 필요

- 최근 서울, 인천, 강원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 그러나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운용을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재정비와 더불어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 내 전담 조직 구축 등의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전영준(부연구위원·yjjun@cerik.re.kr)

4) 이 외에도 지역 건설산업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외부 공개하여 활용성을 증대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시·도의 경우 이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전무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 건설산업 현황에 대한 자료와 이해가 부재한 실정임.

5)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 민간건설공사의 수급인 대금 피해 지속, 제도 개선 필요 -

2013년 8월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 도입

- 2012년 10월 국회에서 이이재 의원 등은 표준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함.
- 2013년 8월에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에 있어 원수급인이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 이에 대응해 발주자(도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가 입법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수급인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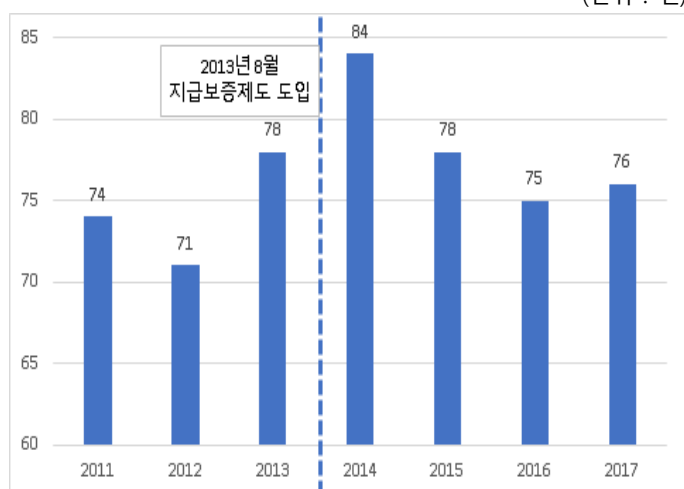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 의문

- 대한상사중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 도입 이후 분쟁건수가 오히려 소폭 증가하면서 지급보증제도 도입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민간건설공사 분쟁건수는 지급보증제도 도입 이전(2011~2013) 연평균 74건이었으나, 도입 이후(2014~2017)에는 연평균 78건으로 소폭 증가함.
- 민간건설공사의 분쟁 원인으로 추가 공사비 청구, 공사 잔금 청구가 민간건설공사 분쟁 건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 민간건설공사 분쟁건수(2011~2017)

(단위 : 건)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 한편, 민간건설공사의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 이래 민간건설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을 발급받은 실적은 전무한 수준임(<표 1> 참조).
 - 국내에서 민간발주자가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SGI서울보증에 유일하데 2014년 2월 처음 출시된 이래 연간 지급보증실적은 10건 이하를 보이고 있으며, 금액으로도 10억 이하를 보임.
 - 민간건설공사 수주액 대비 지급보증실적은 0.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민간건설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은 실효성이 없는 수준임.

<표 1> 민간공사 수주액과 이행(지급)보증보험 실적

연도		2014	2015	2016	2017.8
민간공사 수주액(조원)		66.7	113.3	117.5	74.3
이행(지급)보증 보험실적	건수(건)	2	4	6	5
	금액(백만원)	2,593	253	584	190
민간공사 보증비율(%)		0.0039	0.0002	0.0005	0.0003

주 :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은 2014년 2월 처음 출시됨.
 자료 : 대한건설협회, SGI서울보증.

■ 해외 주요국의 건설공사대금 보호 정책

- 건설공사는 ‘발주자-원도급자’, ‘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자-장비업자 등’ 여러 단계의 계약을 통해 수행됨. 따라서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은 전반적인 ‘대금지급 사슬’(payment chain)의 안정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 등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함.
- 해외에서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한 법적 보장을 통해, 원수급자 외에도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 등을 시스템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먼저 등기된 일반 저당권자보다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담보권을 우선하여 부여하는 ‘공사우선특권(Construction Lien)’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제적 계약서인 FIDIC 건설공사 일반계약 조건 등은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 갖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유치권이 존재하나 발주자의 금융차입 등을 위해 계약시 유치권 포기각서를 종종 받고 있음. 따라서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의 안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는 상황으로 향후 지급보증제도의 의무화 등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엄근용(부연구위원 · kyeom@cerik.re.kr)·김정주(연구위원 · kjj@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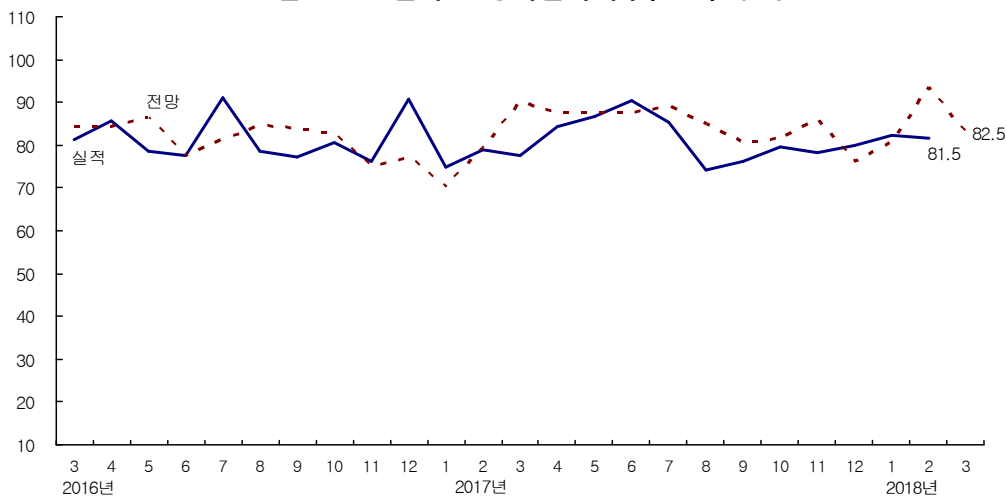
2월 CBSI, 전월 대비 0.8p 하락한 81.5 기록

- 통계적 반락 효과 및 대형기업 심리 위축 영향, 3월에도 부진 지속 예상 -

2018년 2월 CBSI 전월 대비 0.8p 하락한 81.5, 3개월 연속 80선 초반 지속

- 2018년 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통계적 반락 효과 및 대형기업의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81.5를 기록함(<그림 1>참조).
 - CBSI는 지난해 12월 80.1을 기록한 이후 올 1월에 82.3, 그리고 2월에 81.5를 각각 기록, 3개월 연속 80선 초반에서 횡보세를 지속함.
 - 특히, 통상 흑한기 이후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2000~17년까지 18년 간 지수가 하락한 경우는 2011년과 2013년 단 2차례에 불과할 만큼 2월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 2월에는 이례적으로 지수가 0.8p 소폭 하락함.
 - 이는 지난 1월 지수(82.3)가 2002년 1월 93.4를 기록한 이후 1월 수치로는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작년 연말 발주가 계획된 공사 중 일부가 올 초로 이월 발주된 것이 지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1월에 지수가 이례적으로 수치가 높았는데 2월에는 이러한 영향이 감소한 것임.
 - 또한, 지난 2월 21일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는데, 향후 재건축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해 대형기업의 심리가 위축, 지수 하락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기업 규모별로 대형과 중소기업 지수 하락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 지수가 전월 대비 개선되었으나, 대형과 중소기업은 전월 대비 하락해 지수가 악화됨(<표 1>참조).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8.3p 하락한 91.7을 기록함.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11.9p 상승한 89.7을 기록함. 지난해 12월 66.7을 기록한 이후 1월과 2월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10p 이상 상승함.
 - 한편,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6.4p 하락한 60.3을 기록함.
- 지역별로 서울 기업은 상승하였으나, 지방 기업의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 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3.0p 상승한 93.6을 기록함.
 - 지방 기업 지수는 전월 대비 6.0p 하락한 67.0을 기록함.

<표 1> 기업 규모별, 지역별 CBSI 추이

	2017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4.2	86.6	90.4	85.4	74.2	76.3	79.5	78.2	80.1	82.3	81.5	93.3	82.5	
규 모 별	대형	100.0	100.0	100.0	91.7	64.3	78.6	92.3	85.7	92.9	100.0	91.7	107.7	66.7
	중견	74.2	87.1	89.3	92.9	86.7	74.2	75.9	81.8	66.7	77.8	89.7	88.9	105.1
	중소	77.1	70.2	80.4	69.6	71.7	76.1	68.8	65.3	80.4	66.7	60.3	81.5	75.4
지 역 별	대형	89.6	95.2	93.8	94.0	76.9	76.4	85.2	84.3	82.1	90.6	93.6	94.7	78.1
	중소	76.4	73.7	85.0	72.7	70.3	76.2	71.3	69.9	77.2	73.0	67.0	91.7	87.9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8년 3월 전망치, 2월 실적치 대비 1.0p 상승한 82.5

- 2018년 3월 CBSI 전망치는 2월 실적치 대비 1.0p 상승한 82.5를 기록함.
 - 통상 3월에는 흑한기가 지나면서 공사발주 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CBSI 전망치도 이러한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수 상승폭이 1.0p에 불과하고 지수도 80선 초반에 불과해 건설기업들은 3월에도 여전히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이흥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싱가포르의 건설 생산성 향상 로드맵과 시사점

-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노력 필요 -

■ 싱가포르 정부는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로드맵 발표

- 싱가포르의 1차, 2차 건설 생산성 향상 로드맵(Construction Productivity Roadmaps)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3%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
 - 싱가포르 건축·건설청(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에서는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1차와 2차 건설 생산성 향상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싱가포르의 건설 생산성¹⁾ 향상은 2010년 약 0.3% 정도에 불과했으나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연간 2%까지 상승함.
- 2차 건설 생산성 향상 로드맵은 (1)고속련 인력의 확보 (2)새로운 기술 활용, (3)가치사슬 통합 등 세 부문에 초점을 맞춤.

■ 고속련 건설인력 확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 지원

-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력이 해외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싱가포르 건설 산업의 경우 고속련공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싱가포르 정부는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설 인력 중 고속련 인력(R1)을 최소 10%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함. 이를 위해 일반 기능공(R2, Basic Skilled workers)을 고급 숙련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경로 제시, 고속련 외국 인력 고용 확대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
 - 이에 따라 건설 인력 중 고속련 인력(R1)은 2011년 약 2%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20%, 2017년에는 40%까지 증가함.

■ 공장 제작 및 조립 방식(DfMA)의 활용으로 생산성의 혁신적 향상을 도모

- 공장 제작 및 조립 방식(DfMA: Design for Manufacturing and Assembly) 중 가장 대표적인 PPVC(Prefabricated Pre-finished Volumetric Construction)²⁾의 활용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면의 노력이 진행됨.³⁾

1) 건설 생산성은 작업자 1인이 하루에 완성할 수 있는 면적 (amount of floor area(m²) completed per man-day)으로 측정됨.

2) PPVC의 활용은 프로젝트에 따라 인력 및 시간 절약 측면에서 생산성을 약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PPVC 외에도 미리 재단 및 가공된 대량의 목재(MET: Mass Engineered Timber), 구조용 강재(Structural Steel) 등이 활용됨.

- 이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표준화를 위한 입법 절차 등을 진행함.
- 2014년 11월부터 싱가포르 정부의 토지를 매각하는 GLS(Government Land Sales) 프로그램에 따라 선정된 건설 현장의 경우 PPVC 채택이 의무화됨.
- BCA는 기계화 및 자동화가 잘 갖추어진 고급화된 조립식 건축물 생산 설비인 ICPHs(Integrated Construction and Prefabrication Hubs)를 건설함.
- PPVC 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는 2013년 1개에 불과했으나 2017년 24개로 크게 증가함. 현재 PPVC 방식으로 7개의 콘도미니엄을 건설 중이며, 추가적으로 7개의 콘도를 건설할 예정임.

■ BIM 활용을 통한 가치사슬의 통합 추구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강화를 모색함.
 - BIM을 활용함으로써 설계, 사전 제작 및 건설을 통합하여 가상의 환경에서 건설 공사를 시뮬레이션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펀드 조성

- BCA는 S\$8억(약 6,527억원) 규모의 건설 생산성 펀드(CPCF: Construction Productivity and Capability Fund)를 조성,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
 - 2016년 말까지 인력 개발, 기술 도입, 역량 개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통합을 위해 S\$4억5천만(약 3,672억원)이 투입되어 9,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음.
 - 건설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의 활용에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음. 또한 생산성 향상으로 투입 노동력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신기술을 활용할 유인이 생김.
- 공공 부문 프로젝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S\$1억5천만(약 1,224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건설 생산성 기금(PSCPF: Public Sector Construction Productivity Fund)도 조성함.

■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생산성 혁신 추진해야

- 싱가포르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더불어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우리 건설산업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치화된 목표, 전략, 자원 등의 세부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생산성 혁신에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미국의 PE 계속교육 현황과 시사점

- 개방형 교육으로 기술자가 필요한 교육을 실시, PE의 역량 강화에 초점 뒤¹⁾

■ 우리나라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직무교육의 실효성 떨어져

- 현재 우리나라 건설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정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의 경우 자격증을 획득한 PE(Professional Engineer)가 이를 유지 및 갱신하기 위해서는 각 주의 등록청이 규정한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이수해야 함.
- 본 고에서는 미국의 PE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법정직무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봄.

■ 미국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PE가 계속교육 이수할 수 있어

- 미국의 PE 제도 및 법률은 각 주마다 독립된 제도를 가지고 있어 주(state)별로 PE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PE의 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9~15PDH/year의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함. 일반적으로 PDH의 획득 방법은 다음과 같음.
 - ① 대학 교과 과정 이수
 - ② 계속교육 과정(continuing education course) 이수
 - ③ 통신 강좌 형식의 단기 과정 혹은 개발 학습을 통한 획득
 - ④ 검증된 세미나, 내부 교육과정, 워크숍, 전문적/기술적 회의/모임/컨퍼런스 등에서의 발표 혹은 참여
 - ⑤ 상기 ①~④ 에서의 교육 혹은 강의를 통한 획득
 - ⑥ 저술(article, paper, book) 혹은 자격검증을 위한 출제를 통해 획득
 - ⑦ 관련 학·협회에서의 활동을 통한 획득
 - ⑧ 특허
 - ⑨ 자기 주도 학습(self-directed study)

1) 본 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연구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요약·정리함.

- 또한, 각 학점의 PDH로의 변환은 다음과 같음.
 - ① 대학의 1학점(1 college or unit semester hour) : 45 PDH
 - ② 대학의 1학점(1 college or unit quarter hour) : 30 PDH
 - ③ 계속 교육(1 continuing education unit) : 10 PDH
 - ④ 1시간의 강좌, 세미나 또는 콘퍼런스, 회의 등에서의 1시간 발표 : 1 PDH
 - ⑤ 교육(teaching)의 경우는 2배의 PDH로 인정
 - ⑥ 각각의 출간된 논문, 저서 등(paper, article, or book) : 10 PDH
 - ⑦ 전문 학·협회 등(Active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and technical society) : 2 PDH
 - ⑧ 특허 건당 : 10 PDH
 - ⑨ 자기 주도 학습 : 최대 5 PDH까지 허용

■ 건설기술자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법정직무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 미국의 PE 계속교육은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자 교육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임.
 - 첫째, 교육의 규정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동일하게 규정된 반면, 미국은 각 주별 PE법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음.
 - 둘째, 교육의 목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술자의 법정 의무 교육은 현장 배치 기술자와 승급하고자 하는 기술자가 그 대상이 되는 반면, 미국의 PE 계속교육은 자격의 갱신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임. 즉, 우리나라의 경우 현장의 필요에 초점을 둔 측면이 강하다면 미국은 역량 강화라는 측면이 강함.
 - 셋째, 교육의 운영 방식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직무분야별 및 등급별(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미국의 경우 개방형 교육으로 기술자 각자가 필요에 따라 알맞은 교육 과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교육기관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는 법인인 교육기관과 협·단체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거의 제한이 없이 대학을 비롯해 협·단체뿐만 아니라 사설학원까지 다양함.
-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건설업의 질적 변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우리나라 건설기술자들의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법정직무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술자의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최은정(부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주거복지정책

영화를 좋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소한 취미중의 하나로 가끔 혼자 영화관을 찾는다. 지난해 좋은 영화가 없나 찾다가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라는 영화가 눈길을 끌었다. 마음을 끈 것은 화려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은 주연 배우의 모습과 주체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제목이었다.

간간하지만 일평생을 목수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병 발병으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다. 이에 정부가 지원하는 질병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나 담당자의 터무니없는 면담 태도로 기각된다. 이후 항고기일이 잡히기까지 기약을 알 수 없는 기다림속에서 그는 자존심을 지키며 근근이 버티어간다. 그 와중에도 그는 두 아이를 가진 미혼모를 도우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독려한다. 상황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한다.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요...”

영화는 초로의 노인에게도 컴퓨터 활용이 강요되고, 한 번의 전화 통화를 위해서는 기계음을 들으며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행정처리 절차가 뒤죽박죽되었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여줌으로서 영국의 서민 지원 시스템이 얼마나 관료적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지고 모순된 제도들로 인해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담담히 그려낸다.

작년 5월 ‘사람 중심의 경제’를 표방한 새 정부 출범이후 우리나라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부문에서도 작년 11월 29일 주거약자를 지원

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며,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대국민 주거복지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페이스 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런 멋진 제목과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거의 모든 언론들은 연일 강남 4구의 집값 변동만을 열을 내어 보도하고,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에서조차도 재건축 정책에 따른 집값의 변동에 대해서만 갑론을박할 뿐 서민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과연 현재 정부가 추진한다는 서민 주거정책은 적정한지, 분양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과연 서민층 신혼부부를 위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점검해 보았다는 내용의 기사는 한 줄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새 정부 출범이후 사회 곳곳에서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기대가 높다는 것은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이왕에 서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잘해보자. 그래야 조세 부담의 증가로 자칫 늘어났을지도 모르는 중산층의 불멘소리를 박수와 지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타임즈, 2018. 3. 6>

김민형(선임연구위원 · mhkim@cerik.re.kr)